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. 9. 23 선고 2022가단519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
담당변호사 김문성, 전홍록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2. 8. 19.
판 결 선 고 2022. 9. 2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8. 12. 14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8. 12. 14. 접수 제21050호로 마친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B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C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9770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“피고는 원고에게 42,653,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2014. 1. 28. 확정되었다.

2) C은 2018. 1. 26. B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 관련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)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설정

피고는 2018. 12. 14.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)를 마쳤다.

다. B의 무자력

B은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 성립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하여

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,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수웅

부동산의 표시

강원 횡성군 D 답 856㎡. 끝.

